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, 정책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의 3단계 구조로 논의구조가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

이에, 위원회 산하 체계를 인구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의구조로 개선하고 사무기구의 행정력을 제고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현행 정책운영위원회(40인 이내), 분과위원회 구조를 운영위원회(20인 이내), 자문단 구조로 개편(제8조①,②,③,⑤ 개정)

1) 본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논의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의 참여를 활성화하며, 본위원회 민간위원이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간 논의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,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1인은 상임위원으로 지명하여 본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을 지원하게 하고자 함

2) 운영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하여,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자 함

3) 논의구조를 간소화하고, 상임위원이 위원회 전반적인 논의에 참여하여 논의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나. 사무기구의 장 직제 변경(제9조②,④ 개정)

사무기구의 장은 현 대통령비서실 저출산업무 담당 비서관과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으로 맡던 것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기구의 운영효율성 강화 등을 기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)”를 “(저출산·고령사회운영위원회)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·조정·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·고령사회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제2항 중 “40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분과위원회”를 “자문단”으로 한다.

- 2.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. 이 경우 지명된 위원 중 1명은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한다.

⑤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,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공동으로 사무기구”를 “사무기구”로 한다.

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기구의 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사무기구의 장의 임기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) ①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·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(생략) 2.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.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	제8조(저출산·고령사회운영위원회) ①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·조정·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·고령사회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----- -- 20명 ----- ---.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. 이 경우 지명된 위원 중 1명은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한다. 3. ----- -----

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.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.

④ (생략)

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⑥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사무기구) ① (생략)

② 사무기구의 장은 법 제23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 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는다.

③ (생략)

④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공동으로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----- 공무원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한 사람.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,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⑥ ----- 자문단 -----

-----.

제9조(사무기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사무기구 -----

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08